

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는 담보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합니다.

**근 담 보**

팀 원	팀 장	부점장

**양도 담 보 계 약 서**

- ★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“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,
- ★ 굵은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으로 표시된 란(당사자란, 제1조 및 계약서 끝 부분)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채 권 자    결	400 01 00000		
양도담보권자	농업		
주 소	주식회		
채 무 자	광주광		
주 소	도, 소		
양도담보권	제		
설 정 자			
주 소			

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.

제 1 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 
 (1) 설정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 부분 “양도담보목적물 목록”란에 기재한 물건(이하 “담보목적물”이라 합니다)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.  
 1. 피담보채무의 범위:  
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가원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한정 근담보** 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, 기타 부채무를 포함합니다)를 담보 하기로 합니다.

**특정근담보**

채무자가 채권자(본\*지점)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

년   월   일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약정서  
 년   월   일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약정서

**한정근담보**

채무자가 채권자(본\*지점)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

거래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거래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거래